

미국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달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구

손 용 진(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임 병 우(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은 개인의 책임과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려고 하는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없다. 미국에서의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어떠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자한다. 미국의 노인층을 위한 공공장기요양보장은 통일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범주적(categorical), 잔여적(residual), 그리고 점진적(incremental)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결과, 급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상자들은 저소득 노인들만 국한되고 있으며, 제도의 통일성 결여로 인해 다른 제도로부터 보충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결과 사적 케어 매니저가 활용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이 점증주의에 의해 기존의 제도에서 조금씩 침식되어 왔기 때문이며,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장기요양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장기적인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는 저소득층 노인에 국한하여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형태로 메디케이드(Medicaid)가 담당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노인빈곤층의 불과 1/3정도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보편적인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급여 범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 대처를 위해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2008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최근 발표되었다. 미국 장기요양제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논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을 단행한 레이건 정부 이후 기본적인 미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부시행정부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메디케이드의 재원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를 결국 주정부가 수용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는 사회/경제체제가 다르지만, 최근 미국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개혁동향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